목 차

□ HighFive그랑에이지변액연금보험 무배당 2504 약관

ᆺ	∥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주계약 - 1
	제1조(목적) ·····	주계약 - 1
	제2조(용어의 정의)	주계약 - 1
ᄌ	2관 보험금의 지급	주계약 - 7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주계약 - 7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주계약 - 8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주계약 - 9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주계약 - 9
	제7조(보험금의 청구)	주계약 - 9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주계약 - 9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주계약 - 10
	제10조(주소변경 통지)	주계약 - 11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주계약 - 11
	제12조(대표자의 지정)	주계약 - 11
ᄌ	3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주계약 - 11
	제13조(계약자적립액의 계산)	주계약 - 11
	제14조(펀드의 운용 및 평가)	주계약 - 11
	제15조(펀드의 유형)	주계약 - 12
	제16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주계약 - 12
	제17조(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주계약 - 13
	제18조(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주계약 - 13
	제19조(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주계약 - 13
	제20조(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주계약 - 14
	제21조(계약자 수시 공지에 관한 사항)	주계약 - 14
	제22조(자산운용보고서 교부에 관한 사항)	주계약 - 14
	제23조(특별계정의 폐지)·····	주계약 - 14
	제24조(기타사항)	주계약 - 14
ᄌ	4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주계약 - 15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주계약 - 15
	제2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주계약 - 15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	주계약 - 16
ᄌ	5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주계약 - 16
	제28조(보험계약의 성립)	주계약 - 16
	제29조(청약의 철회)	주계약 - 17

제3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주계약 - 18
제31조(계약의 무효)	주계약 - 19
제3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주계약 - 19
제33조(노후긴급자금 신청제도에 관한 사항)	주계약 - 21
제34조(보험나이)·····	주계약 - 22
제35조(계약의 소멸)	주계약 - 22
제6관 보험료의 납입	주계약 - 23
제3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주계약 - 23
제3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주계약 - 24
제38조(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주계약 - 24
제3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주계약 - 25
제4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주계약 - 26
제41조(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주계약 - 26
제42조(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	주계약 - 27
제7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금금 등	주계약 - 28
제4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	주계약 - 28
제43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주계약 - 28
제4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주계약 - 28
제4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주계약 - 29
제46조(해약환급금) ·····	
제47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주계약 - 29
제48조(보험계약대출)	주계약 - 31
제49조(배당금의 지급)	주계약 - 31
제8관 분쟁의 조정 등	주계약 - 31
제50조(분쟁의 조정)	주계약 - 31
제51조(관할법원) ·····	주계약 - 32
제52조(소멸시효)	주계약 - 32
제53조(약관의 해석)	주계약 - 32
제54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주계약 - 32
제55조(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주계약 - 32
제5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주계약 - 33
제57조(개인정보보호)	주계약 - 33
제58조(준거법)	주계약 - 33
제5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주계약 - 33
(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주계약 - 34
(별표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주계약 - 38
(별표2) 장해분류표	주계약 - 39
(별표3) 재해분류표	주계약 - 61

□ HighFive그랑에이지변액연금보험 무배당 2504 약관

HighFive그랑에이지변액연금보험 무배당 2504 약관

* 이 계약의 관련 규정은 약관요약서 내 보험계약관련 법 •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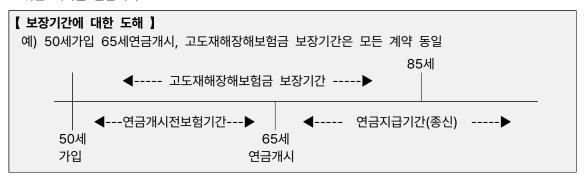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 ①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② 이 계약은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으로 구성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계약관계 관련 용어
 - 1.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3.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4.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5.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6. 보장계약: 85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발생한 동일한 재해로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 고도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 7. 연금계약: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평생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 ② 지급사유 관련 용어
 - 1. 장해: (별표2) "장해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2. 재해: (별표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3.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③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1.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이자 계산법 예시 】

이자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복리로 나눕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복리는 (원금+이자)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10%) + (100원×10%) = 120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복리계산법: 100원 + (100원×10%) + [100원+(100원×10%)]×10% = 121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지

2.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해지 】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4. 계약자적립액: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 5. 보장계약 계약자적립액: 거치형의 경우, 장래의 고도재해장해보험금 지급청구에 대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유보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6. 기준가격: 펀드의 자산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좌당 기준가격으로 표시됩니다. 펀드의 계약자적립액은 해당일의 좌당 기준가격과 계약자가 보유한 좌수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설명】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기준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 좌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 7. 평생연금기준금액이율: 평생연금기준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평생연금기준금액 증액기간동안 적용되는 이율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연단리 기준)
 - 가. 적립형
 - (1) 보험계약일부터 20년까지의 기간: 5/100
 - (2) 20년이후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 4/100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이 20년보다 짧을 경우 (1)에 따라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 5/100 적용)

나. 거치형

보험계약일부터 30년의 기간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단,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 중 작은 기간: 5/100

【 평생연금기준금액이율의 복리 이자율 환산 예시 】

가. 적립형

예시) 40세 가입, 65세 연금개시, 10년납

- 연단리 기준 : (1) 보험계약일부터 20년까지의 기간: 5/100
 - (2) 20년이후부터 65세 계약해당일까지: 4/100
 - ⇒ 연복리 기준으로 환산시 3.37%

나. 거치형

예시) 40세 가입, 65세 연금개시, 일시납

- 연단리 기준 : 보험계약일부터 65세 계약해당일까지: 5/100
 - ⇒ 연복리 기준으로 환산시 3.30%

④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1.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 당일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2.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3. 계약해당일: 계약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매년 도래하는 계약일과 '월'과 '일'이 동일한 날짜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4. 월계약해당일: 계약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매달 도래하는 계약일과 '일'이 동일한 날짜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월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월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5. 연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부터 1년씩 지난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의 계약해당일 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연계약해당일/월계약해당일 】

예시1) 보험계약일이 2024년 2월 28일인 경우 2025년의 연계약해당일은 2월 28일 예시2) 보험계약일이 2024년 10월 31일인 경우 2024년 11월의 월계약해당일은 11월30일

⑤ 보험료 관련 용어

- 1. 기본보험료
 - 가. 적립형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거치형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하기로 정한 일시납보험료로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2. 추가납입보험료
 - 가. 적립형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중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이내로 하며,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인출금액만큼 추가로 보험료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납입완료시점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매회 납입할 때 최저한도는 1만원 이상 만원단위 금액으로 하며, 1회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납 기본보험료 x 가입 후 경과월수 + 선납보험료] x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 험료 합계액 +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의 합계액(다만, 경과월수는 가입할 때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1회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예시 】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월납 기본보험료 50만원, 선납보험료(3개월) 150만원,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합계액 100만원,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의 합계액 30만원 가정시

- 가입 후 경과월수 10개월(10회 납입) 시점의 1회 납입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 (50만원 × 10개월 + 150만원) × 200% 100만원 + 30만원
- = 1,230만원

나. 거치형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1년"시점까지 수시로 납입할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의 총 한도는 기본보험료의 200%로 합니다.

- 3.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액을 중도에 인출한 경우 적립형에 한하여 제33조(노후긴급자금 신청제도에 관한 사항)에서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3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및 제47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4. "장기유지보너스"라 함은 적립형의 5년이상 유지된 장기계약(5년납 제외)에 한하여 61회차 기본보험 료를 납입할 때부터 납입기간 종료시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때 기본보험료의 1.0%를 추가납입보 험료 계약자적립액에 더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장기유지보너스가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액에 더하여 적립되는 경우에는 장기유지보너스가 발생한 시점의 펀드 편입비율에 따라 각 펀드에 투자하고, 그에 따라 각 펀드의 좌수가 증가합니다. 다만, 제2호의 "추가납입보험료" 및 제6호의 "기준추가납입보험료"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5. "기준 기본보험료"라 함은 평생연금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며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액을 중도에 인출한 경우 "기준 기본보험료"는 제3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 및 제47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제5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이후 납입된 기본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6.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라 함은 평생연금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며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추가 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액을 중도에 인출한 경우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는 제3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 및 제47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제5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이후 납입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7.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라 함은 납입보험료에서 소정의 사업비 및 보장계약 순보험료(거치형에 한함)를 제외한 금액으로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⑥ 변액보험 관련 용어

- 1. "변액보험"이라 함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2. "일반계정"이라 함은 제3호의 '특별계정'으로 운용하는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에 대하여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제3호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자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합니다.

【설명】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3. "특별계정"이라 함은 변액보험에서 납입보험료의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 정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운용결과는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설명】

- 계약자적립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보험 업법」 제108조 참고)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 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 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 4. "펀드"라 함은 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자산을 말합니다.
- 5. "월공제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적립형

-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1) 납입기간 중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평생연금 보증비용 및 최저사망적립액 보증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매월 월계약해당일(보험계약일 포함)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납입중 유지관련비용)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할 때공제합니다.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해약환 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이율 및 위험률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2) 납입기간 이후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용), 평생연금 보증비용 및 최저사 망적립액 보증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85세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계약관리비용(연금개시후 유지관련비용), 평생연금 보증비용 및 최저사망적립액 보증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 최저사망적립액이 '0'이 되면, 이후최저사망적립액 보증비용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나. 거치형

해당 월의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용), 평생연금 보증비용 및 최저사망적립 액 보증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동안 매월 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 포함)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 최저사망적립액이 '0'이 되면, 이후 최저사망적립액 보증비용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 6. "위험보험료"라 함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월계약해당일마다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7. "계약체결비용"이라 함은 이 계약의 보험계약체결을 위해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8. "계약관리비용"이라 함은 이 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해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9. "평생연금기준금액"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적립액 및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동안 평생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1) 평생연금기준금액이라 함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에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의 매년 평생연금기준금액이율 해당액을 해당 보험료 납입일을 기준으로 평생연금기준금액 증액기간동안 일자 계산하여 더한 금액(연단리 기준)을 말합니다.
 - (2) 평생연금기준금액 증액기간이라 함은 적립형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단,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 거치형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30년의 기간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단,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 중 작은 기간을 말합니다.
 - (3) (1)에 따라 계산된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의 평생연금기준금액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동 안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4) (1)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액을 중도에 인출한 경우 평생연금기준금액은 제3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6항 및 제47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제6항에 따라 계산된 평생연금기준금액에 해당 감액 또는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이후에 (1)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10. "평생연금"이라 함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평생연금기준금액과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에 평생연금 지급률 및 (1+장기유지가산율)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2종(초기집중강화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동안 제11호의 평생연금 지급률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 11. "평생연금 지급률"은 연금지급개시나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가. 적립형

(1) 1종(기본형)

연금지급개시나이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	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
50세 이상 55세 미만	3.2%	3.0%
55세 이상 60세 미만	3.7%	3.5%
60세 이상 65세 미만	4.2%	4.0%
65세 이상 70세 미만	4.5%	4.3%
70세 이상 80세 미만	5.0%	4.8%
80세 이상	5.4%	5.4%

(2) 2종(초기집중강화형)

	피보험자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금개시후	75세까지	연금개시후	76세부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50세 이상 55세 미만	3.90%	3.70%	1.95%	1.85%
55세 이상 60세 미만	4.40%	4.20%	2.20%	2.10%
60세 이상 65세 미만	5.00%	4.80%	2.50%	2.40%
65세 이상 70세 미만	5.40%	5.20%	2.70%	2.60%
70세	6.00%	5.80%	3.00%	2.90%

나. 거치형

연금지급개시나이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	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
50세 이상 55세 미만	3.50%	3.35%
55세 이상 60세 미만	3.75%	3.60%
60세 이상 65세 미만	4.00%	3.80%
65세 이상 70세 미만	4.25%	4.00%
70세 이상 75세 미만	4.50%	4.25%
75세 이상 80세 미만	4.75%	4.50%
80세 이상 85세 미만	5.25%	5.00%
85세 이상	6.00%	5.50%

12. "장기유지 가산율"이라 함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다만, 장기유지 가산율은 적립형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장기유지 가산율
20년 미만	0%
20년 이상 30년 미만	10%
30년 이상 40년 미만	20%
40년 이상	30%

- 13. "최저사망적립액"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액으로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제9호에서 정한 "평생연금기준금액"을 말합니다.다만,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제9호에서 정한 "평생연금기준금액"에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평생연금 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이 금액이 '0'보다적은 경우 '0'으로 합니다.
- 14. "평생연금 보증비용"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연금개시 후 종신토록 평생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15. "최저사망적립액 보증비용"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험기간동안 최저사망적립 액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16. 특별계정운용보수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합니다.

- (1) 운영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2) 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3) 수탁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4) 사무관리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 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85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발생한 동일한 재해로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고도재해장해보험금(최초 1회에 한함)
-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평생연금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재해로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로부터 2년 이내,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동일한 재해란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 ④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또한,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⑥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⑨ 이 계약에서 장해는 85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발생한 원인에 의한 장해에 한합니다.
- ⑩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가중된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장해지급률이 이미 판정되었다고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판정받은 장해지급률을 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고도재해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 2. 위 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따른 고도재해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고도 재해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⑩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계약자적립액이 '0'이 된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

일에 살아있을 경우 평생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고의】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 심신상실 (心神喪失) 】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설명】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계약에서 그 중 1인이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는 그 1인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보험수익자에게는 그 1인에 지급할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설명】

"지체 없이"라 함은 "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일이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 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평생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한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1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보험금 가지급제도 】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가지급합니다.
- ⑤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 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 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설명】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른 고도재해장해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업방법서 】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 보험사업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취급방법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 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0조(주소변경 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를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제12조(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료 지급의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위험유지의무 등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 연대(連帶) 】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가 해당 의무 전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한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면, 그와 같이 이행된 범위에서는 다른 사람은 의무를 면하게 됨)

제3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13조(계약자적립액의 계산)

- ① 적립형의 경우,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액 계산은 이전 계약자적립액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에 월공제액,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및 평생연금액(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거치형의 경우,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액 계산은 이전 계약자적립액에서 월공제액,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 (인출수수료 포함) 및 평생연금액(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③ 회사는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계약자적립액에서 매일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합니다.
- ④ 회사는 장기유지보너스를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액에 더하여 적립합니다.

제14조(펀드의 운용 및 평가)

①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 자적립액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 ③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 ④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 관련사항을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완전히 지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합니다.

제15조(펀드의 유형)

-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1. 글로벌멀티에셋자산배분형Ⅲ

국내·외 주식, 상품, REITS,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기구(ETF 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50%이하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외 채권[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 채권형 수익증권(ETF 포함), 채권관련 파생상품, 기타 사모집합투자증권 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다만, 국내·외 주식 투자는 국내 및 국외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등에 주로 투자하며,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환율변동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등을 포함한 헤지 전략을 실행할수 있습니다.

2. AI글로벌멀티에셋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기반으로 글로벌 분산투자를 통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다양한 전술적 자산배분 전략을 추구합니다. 국내·외 주식, 상품, REITS,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기구(ETF포함)에 순자산의 5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외 채권, 채권관련 수익증권(ETF포함)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투자대상 자산 및 자산별 편입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환율변동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서 회사가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투자대상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펀드의 유형 이외에 새로운 펀드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가입한 계약자도 신 규펀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16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제15조(펀드의 유형)에서 정한 펀드 중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5% 단위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때 펀드별 편입비율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설정이 없는 경우는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따릅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은 5% 단위 로 설정해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계속 납입되는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 또는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및 추가납입 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펀드로 이전하는 계약자적립액의 적립비율 변경을 각각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됩니다.
- ⑤ 회사는 제3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의 적립비율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3조(특별계정의 폐지) 제 1항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

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 ⑥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 ①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의 적립비율의 변경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계약자적립액의 0.1%와 2,000원 중 적은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제5항에서 현금을 이전할 때 공제합니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펀드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17조(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 ①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및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펀드자동재 배분을 각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액은 계약자가 지정한 날부터 펀드자동 재배분 주기(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 중 계약자가 선택한 주기를 말하며, 이하 "펀드자동재배분 주기"라 합니다)마다 제16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에 따라 계약자가 정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 재배분됩니다. 다만, 펀드자동재배분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펀드자동재배분 주기 도중에 계약자가 제16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에 따라 펀드의 편입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편입비율에 따라 자동 재배분됩니다.
- ③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매년 4회 이내의 범위에서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설명】

펀드자동재배분이라 함은 일정 주기마다 펀드별 계약자적립액을 고객이 선택한 펀드편입비율로 재배분하는 옵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주기 펀드자동재배분, A펀드 50% + B펀드 50%를 선택한 경우에는 매3개월마다 A펀드와 B펀드의 계약자적립액은 1:1의 비율로 재배분됩니다.

제18조(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 ①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제19조(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을 설정할 때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 좌당 기준가격 】

· 좌당 기준가격 = <u>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 가치</u> 특별계정의 총 좌수

【 기준가격 】

특별계정의 순자산 가치를 나타내는 가격으로 펀드의 매수 및 매각(환매), 매일 펀드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다만,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20조(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 등과 동법 시행령 제265조에 따른 회계감사 비용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21조(계약자 수시 공지에 관한 사항)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계약자에게 공지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으로 정하는 부실자 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4.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5. 그 밖에 계약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회사가 정하여 공시하는 사항

제22조(자산운용보고서 교부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23조(특별계정의 폐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펀드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 1. 해당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2.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순자산)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1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순자산)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 워본액 】

운용성과와 무관하게 특별계정에 실제 투입된 금액을 말합니다.

- 3. 해당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4. 기타 제1호에서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 자적립액과 함께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제24조(기타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등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이 제정 또는 개정 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4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계약을 승낙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 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 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알려드립니다.

【 반대증거 】

당사자가 상대방이 입증하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 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4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과실】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험설계사에게는 고지 수령권이 없으므로 보험설계사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 (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다만, 인출 및 감액 등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기간의 보험 료는 제외하고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제5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8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의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가입금액 제한 】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보험금 삭감 】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 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보험료 할증 】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제1회 보험료 】

계약의 성립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29조(청약의 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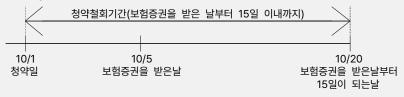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을 초과한 경우

【 청약의 철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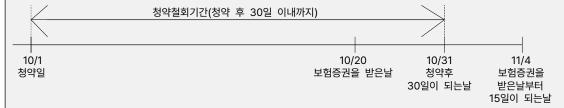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보험상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 예시 】

예시1)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예시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전문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3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1. 서면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약관의 중요한 내용 】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보험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요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의 내용을 말합니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통신판매계약 】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 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 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법정상속인 】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상속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다만, 인출 및 감액 등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기간의 보험료는 제외하고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1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계약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다만, 인출 및 감액 등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기간의 보험료는 제외하고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무효 】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3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기본보험료
 - 2. 연금지급개시나이
 - 3. 연금지급형태
 - 4. 계약자
 - 5.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설명】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고 변경전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항변이 있는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일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까지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추가납입보험료도 기본보험료와 동일한 비율로 감액되는 것으로 합니다)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때의 해약환급금 지급 예시 】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때 회사가 지급해야할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기본보험료의 감액 비율만큼 해약환급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감액 전 (또는 최초가입시)	감액 후	
기본보험료	1,000만원	500만원	
해약환급금	400만원	200만원	
감액할 때 지급금액	200만원(=400만원 - 200만원)		

④ 제3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제33조(노후긴급자금 신청제도에 관한 사항)에서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감액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감액 후 계약자적립액 =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x -감액 전 계약자적립액

㈜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 계약자적립액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에 제 47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제4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⑤ 제3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평생연금기준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감액 후 기준 기본보험료
 - 감액 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 감액 직전 기준 기본보험료 x 감액 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 감액 후 기준 추가납입보험료
 - 감액 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 감액 직전 기준 추가납입보험료 x 감액 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주) "감액 직전 기준 기본보험료" 및 "감액 직전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 계약자적립 액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에 제47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제5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 ⑥ 제3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평생연금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감액 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평생연금기준금액
 - = 감액 직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평생연금기준금액 x

감액 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감액 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 감액 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평생연금기준금액
 - = 감액 직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평생연금기준금액 x

감액 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감액 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취) "감액 직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평생연금기준금액" 및 "감액 직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평생연금기준금액"은 해당 감액 전 계약자적립액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에 제47조(계약 자적립액의 인출) 제6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평생연금기준금액 및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평생연금기준금액을 말합니다.

- ① 계약자는 제1항 제2호의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연금지급개시 전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지급개시나이를 변경신청 하는 시점에 해당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누계액(추가납입보험료 제 외, 선납보험료 포함) 이상을 납입하고,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잔액이 없는 계약에 한하여 연금 지급개시나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연도 기준 년1회에 한함).
- ③ 적립형의 연금지급개시나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연금지급개시나이는 보험료 납입기간(제42조(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제도)에 따라 계약자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만 큼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 이후 도래하는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단, 50세 이후)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며, 회사는 변경된 연금지급개시나이를 기준으로 계산된 평생연금을 지급합니다.
- ① 거치형의 연금지급개시나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연금지급개시나이는 변경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후 도래하는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며, 회사는 변경된 연금지급개시나이를 기준 으로 계산된 평생연금을 지급합니다.
- ⑩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의 연금지급형태를 연금지급개시 전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형과 초기집중강화형을 복수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 ①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⑩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33조(노후긴급자금 신청제도에 관한 사항)

① 노후긴급자금 신청제도라 함은 적립형의 유효한 계약에 한해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가 노후긴급자금의 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에 따라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과 아래의 최저노후긴급자금 보증금액 중 큰 금액에 노후긴급자금 신청비율을 곱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최저노후긴급자금 보증금액
15년 미만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5%
15년 이상 20년 미만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10%
20년 이상 25년 미만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15%
25년 이상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20%

- ② 노후긴급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에게 제1항에서 정한 노후긴급자금을 지급하며, 이 경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평생연금기준금액 및 계약자적립액은 아래와 같이 재계산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사망적립액 및 평생연금을 재산출합니다.
 - 노후긴급자금 지급 이후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평생연금기준금액
 - = 노후긴급자금 지급 직전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평생연금기준금액 × (1-노후긴급자금 신청비율)

• 노후긴급자금 지급 이후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

- = 노후긴급자금 지급 직전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 × (1-노후긴급자금 신청비율)
- ③ 노후긴급자금의 신청비율은 최소 10%에서 100%까지 10%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노후긴급자금 신청비율이 100%인 경우에는 노후긴급자금 지급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자동 해지됩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노후긴급자금을 신청하여 노후긴급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노후긴 급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노후긴급자금을 지급합니다. 노후긴급자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⑤ 노후긴급자금을 신청한 경우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 및 평생연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34조(보험나이)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 1995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25년 4월 13일

⇒ 2025년 4월 13일 - 1995년 10월 2일 = 29년 6월 11일 = 30세

- ③ 청약서류에 적힌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에 적힌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 기재 사실을 근거로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이 변경된 경우,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5조(계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과 최저사망적립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거 치형의 경우 해당 금액에 보장계약 계약자적립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④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익자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지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지급절차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

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6관 보험료의 납입

제3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 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보장개시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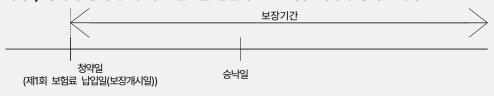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보장개시일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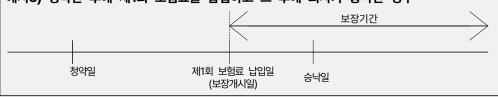
예시1) 청약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예시2)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낙한 경우



예시3)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1.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 제2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 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제3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납입한도에 따라 적립형의 경우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거치형의 경우 "계약승낙일 + 1개월"경과 후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1년"시점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② 적립형에서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경우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제외한 6개월분 이하의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월납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납보험료는 납입일부터 제38조(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제2항 또는 제4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4항에 따른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 보험의 평균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하고, 월계약해당일에 당월 특별계정투입보험료 해당액(당월 기본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을 특별계정으로 투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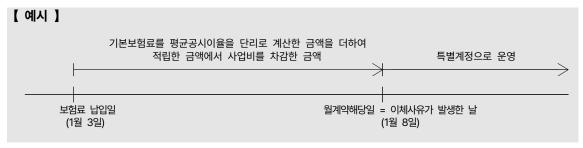
제38조(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 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 ② 제1항에서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제1회 기본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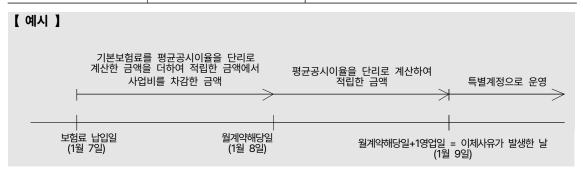
구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이체금액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낙된 경우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기본보험료 납입일'부터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까지는 평균공시이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승낙된 경우	승낙일	물을 단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적립하고, 그 이후는 특별계정의 투 자수익률로 적립한 금액 (다만, 선택한 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펀드의 투자수익률에 대하 여 펀드별 편입비율로 가중 평균한 투자수익률 적용)

2.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구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이체금액
"월계약해당일-제2영 업일"이전에 납입한 경우	"월계약해당일"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 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을 단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적립한 금액에 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



구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이체금액
"월계약해당일-제1영업 일"에 납입한 경우	"월계약해당일+제1영업일 "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을 단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적립한 금액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후 월계약해당일부터 "월계약해당일+제1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을 단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적립한금액



구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이체금액
월계약해당일이후에 납입한 경우	"납입일+제2영업일"	기본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후 납입일부터 "납입일+제2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을 단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적립한 금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27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적용하며, 계약자 가 그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29조(청약의 철회) 제3항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3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 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 자가 다른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 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 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6조(해약환급금) 제 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액은 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합니다.
-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제3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연체된 기본보험료 이상의 금액에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기본보험료의 배수로만 납입하여야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승낙한 계약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로 인하여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계약자적립액과 연체된 보험료 중 특별계정투입보험료 해당액(연체된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에서 부활(효력회복) 승낙일까지 공제되지 못한월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등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이체합니다.
- ④ 제3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부활(효력회복) 승낙 후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납입완료일 +제2영업일"
 - 2. 연체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한 후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승낙일+제 2영업일"
- ⑤ 제2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및 제36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⑤ 제2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41조(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3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강제집행 】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

【 담보권실행 】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된 담보로부터 담보권자가 채무 를 변제받는 절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

납세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하는 압류 및 공매처분 등 절차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42조(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 ① 적립형의 경우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납입기간의 1/2경과시점(다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5년 경과시점)이 지난 이후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동안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3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② 계약자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만큼 보험료 납입기일은 연기되고, 보험료 납입기간은 연장됩니다(이하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을 포함하여 "보험료 납입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로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연금개시나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최초로 돌아오는 연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나이가 연기되며, 이 경우 연기된 연금지급개시나이의 평생연금지급률 및 장기유지가산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연장된 연금 지급개시시점이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나이, 연금 지급개시나이, 연금지급형태"에서 정한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③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항 제5호에서 정한 "월공제액"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기간 및 연장된 납입기간 동안 적용하는 "월공제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
 - 1.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월공제액 위험보험료와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최저사망적립액 보증비용, 평생연금 보증 비용의 합계액
 - 2. 연장된 납입기간 동안 적용하는 월공제액 위험보험료와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용), 최저사망적립액 보증비용, 평생연금 보증비용의 합 계액. 다만, 연장된 납입기간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에서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납입중 유지 관련비용)을 공제하지 않으며,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만 공제합니다.
- ④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제4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3항에서 정한 월공제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간 이내로 하고, 1회 신청할 때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월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총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의 합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3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납입최고(독촉)기간 중에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 그 연체기간을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에 포함합니다.

- ⑤ 회사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의 계약유지를 위해 월계약해당일에 제4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3항에서 정한 월공제액을 충당합니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3항에서 정한 월공제액의 충당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때부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예약자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납입을시중지기간은 종료됩니다.
- ① 회사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의 종료(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신청으로 제3항에서 정한 월공제액이 해약환급금에서 더 이상 공제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보험료납입 일 시중지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4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46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제43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46조(해약환급금)제6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척기간 】

"제척기간"이라 함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하며, 존속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제4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 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 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례】

입원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입원일수 2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46조(해약환급금) 제 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4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4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6조(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3조(계약자의 임의해지)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해지신청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③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④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⑤ 제43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47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 ① 적립형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승낙일 + 1개월"경과 후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험 연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인 출할 당시 기본보험료에 의한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승낙일에서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 내에서 전부 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신청일 + 제2영업 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1. 계약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계약의 총 인출금액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 2.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 주계약의 연간 기본보험료와 300만원 중 큰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② 거치형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승낙일 + 1개월"경과 후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험 연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인 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승낙일에서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내에서 전부 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1. 계약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의 총 인출금액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 2.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 기본보험료의 3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③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경우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로 하며 계약자적 립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연 4회까지 인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경우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항 제3호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인출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x 인출당시 계약자적립액 - 인출금액 인출당시 계약자적립액

- (주) 인출금액은 수수료를 포함하며,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3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을 인출 한 경우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항 제5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하는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인출 후 기준 기본보험료

= 인출 직전 기준 기본보험료 x 인출 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인출 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 인출 후 기준 추가납입보험료

= 인출 직전 기준 추가납입보험료 × 인출 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인출 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주) "인출 직전 기준 기본보험료" 및 "인출 직전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3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을 인출 한 경우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항 제9호에서 정하는 평생연금기준금 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인출 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평생연금기준금액

= 인출 직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평생연금기준금액 x

인출 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인출 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 인출 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평생연금기준금액

= 인출 직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평생연금기준금액 x

인출 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인출 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취) "인출 직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평생연금기준금액" 및 "인출 직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평생연금기준금액"은 해당 인출 전에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3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6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평생연금기준금액 및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평생연금기준금액을 말합니다.

- ① 계약자적립액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따른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적립액 인출 당시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잔여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동안의 월공제액 합계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⑨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때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약환급금에서 차감 하여 지급하므로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연도 】

해당연도 계약해당일부터 차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해당일이 7월 15일인 경우 보험연도는 당해연도 7월 15일부터 차년도 7월 14일까지 를 말합니다.

제48조(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1년"시점까지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가운데 회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원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시점까지 언제든지 상 환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원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금(고도재해장해보 험금 및 평생연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 감할 수 있습니다.
- ④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이 보험의 적용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한 값으로 합니다.
- ⑤ 회사는 제3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⑥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49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8관 분쟁의 조정 등

제50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등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 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5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52조(소멸시효)

- ①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 소멸시효 】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없어지는 법적효과를 가져오는 제도입니다. 원칙 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3년간(예를 들면, 2025년 1월 1일에 보험사고 발생시 2028년 1월 1 일까지)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53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민법」제2조제1항)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4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 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 으로 봅니다.

제55조(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 ① 회사는 계약일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동안 분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줍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혹은 보험기간 중 회사에 대하여 서면, 전화(음성녹취)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5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 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사회통념상 매우 불합리하게 한 합의를 의미합니다.

제57조(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제58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5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계약에서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적립액 및 평생연금에 한하여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예금보험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에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하는 공적 보험 제도입니다.

【 예금자보호법 】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